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436

발의연월일: 2025. 5. 9.

발 의 자:김성원·박충권·김선교

구자근 • 이종배 • 고동진

임이자 · 김정재 · 이인선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영상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정 비율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상콘텐츠 산업은 K-콘텐츠의 핵심 기반으로서 수출, 고용,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적·문화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특히 OTT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플랫폼 지출이 활발한 시점에서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창작 기반을 확대하고, 중소 제작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실질적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4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4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4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	에 대한 세액공제) ①
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u>2025년 1</u>	<u>2040년 1</u>
<u>2월 31일</u> 까지 제1호 각 목의 어	<u> 2월 31일</u>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	
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	
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	
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	
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	
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
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
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
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
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
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
업전문회사"라 한다)에 <u>2025년</u>
<u>12월 31일</u> 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
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2. (생 략)

②・③ (생 략)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 공제) ① ---------- <u>2040년</u> 12월 31일-----1.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